

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5. 28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7. 5. 28
- 다. 상 정 일 자 : '97. 6. 23 (제5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 안 자 : 보건소장 이 대 현
- 나. 개정사유
 -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함.
- 다. 주요내용
 - 제명 "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를" "화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"로 개정
 -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삭제 (안 제2조)
 - 보건진료소내 업무보조원 및 보수등 삭제 (안 제5조, 제5조의 2)
 - 보건진료소 운영 위탁 규정 삭제 (안 제6조)
 - 운영협의회를 협의회로 하고 구성인원명시 (안 제7조)
 - 임원의 부회장 임무 신설 (안 제11조 4항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민병항)

-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론요지

" 생 략 "

6. 심사결과

" 원안가결 "

첨 부 :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-7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5. 28

제 출 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있어서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소재지등 삭제 (안 제2조)
- 나. 보건진료소내 업무보조원 및 보수등 삭제 (안 제5조, 제5조의 2)
- 다. 보건진료소운영 위탁규정 삭제 (안 제6조)
- 라. "운영협의회"를 "협의회"로 하고 구성인원 명시 (안 제7조)
- 마. 임원의 부회장 임무 신설 (안 제11조 4항)

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명 "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"를 "화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 운영조례"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내지 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의 제목 "운영협의회의 설치"를 "협의회의 설치"로 한다.

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내 주민 10명 내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제8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0조의 제목 "기구"를 "회의"로 한다.

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협의회의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협의회에서 회장, 부회장, 감사 각 1인을 둔다.

②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.

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.

제13조중 "찬조금, 성금"을 삭제한다.

제14조중 "법 제20조"를 "법 제21조"로 하고 동조중 "총회"를 "협의회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</p> <hr/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어촌 의료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hr/> <p>제2조(명칭 및 소재지등)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 구역은 별표1과 같다.</p> <hr/> <p>제3조(업무) 보건진료소는 관할 구역 내에서 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hr/> <p>제4조(보건진료원) ①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둔다. ②보건진료원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중에서 군수가 임용한다.</p>	<p>화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운영조례</p> <hr/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hr/> <p>(삭 제)</p> <hr/> <p>(삭 제)</p> <hr/> <p>(삭 제)</p>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 (업무보조원)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진료원 이외에 필요한 업무보조 원을 둘 수 있다.</p>	<p>(삭 제)</p>
<p>제5조의2 (보수등) 보건진료원 및 업무 보조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 등을 지급 한다.</p>	<p>(삭 제)</p>
<p>제6조 (운영위탁)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 제21조의 규정 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(삭 제)</p>
<p>제7조 (운영협의회의 설치)</p> <p>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구역내 주민을 회원으로하여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7조 (협의회의 설치)</p> <p>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내 주민 10명내지 20명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 (정관)</p> <p>1 ~ 3 (생략)</p> <p>4.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사항</p> <p>5 ~ 8 (생략)</p>	<p>제8조 (정관)</p> <p>1 ~ 3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5 ~ 8 (현행과 같음)</p>

신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기구) ①협의회는 각리동에서 선출한 100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.</p> <p>③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④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.</p>	<p>제10조(회의) ① (삭 제)</p> <p>② (삭 제)</p> <p>③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④협회의회의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</p>
<p>제11조(임원) ①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장 1인 2. 부회장 1인 3. 운영위원 20인이내 4. 감사 1인 <p>②회장,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.</p>	<p>제11조(임원) ①협의회에 회장, 부회장 감사 각 1인을 둔다.</p> <p>②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</p> <p>(신 설)</p> <p>제13조 (재정) ①협의회는 진료수입, 회원의 회비, 보조금, 찬조금,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며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14조 (업무수탁) 협의회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 받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	<p>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.</p> <p>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.</p> <p>제13조 (재정) ①협의회는 진료수입, 회원의 회비, 보조금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 (업무수탁) 협의회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 받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